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8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16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□ 제안이유

한 부서(허가과)에서 수행해온 각종 복합민원 인·허가 업무중 일부를 유사업무 부서에 통합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으로 민원의 정확성을 기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건설국 분장사무중 일부를 총무국으로 이관함(안 제5조)

1) 인·허가와 관련한 민원사무 협의·조정

다. 건설국 분장사무중 일부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함(안 제6조)

1)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[(대기, 수질, 소음, 진동배출시설등에 대한허가(변경), 신고]

2) 공장설립 승인

3) 농지관련 인·허가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(농지전용허가, 변경허가 및 협의·허가·신고지 사후관리)

4) 산림훼손관련 인·허가 업무처리(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)

다. 건설국 허가과의 명칭을 건설국 건축과로 조정함(안 제7조 제1항)

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협의·조정

제6조제2항중 제5호·제9호·제12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

9. 공장설립 승인

12. 농지관리

20. 조립 및 육림사업

제7조제1항중 “허가과”를 “건축과”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0호 내지 제1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1조제2항중 “건설국장”을 “사회산업국장”으로 한다

소관 실·과·소		총 무 과 ☎ 940-4123
입 안 자	총 무 과 장	이 한 원
	인사조직담당	이 기 영
	담 당 자	이 종 춘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5조(총무국)① (생략) ② 총무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-3. (생략) 4. <u>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(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제외)</u> 5.-14. (생략)	제5조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1.-3 (현행과 같음) 4. <u>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협의 조정</u> 5.-14. (현행과 같음)	
제6조(사회산업국)① (생략), ②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-4. (생략) 5. <u>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(대기, 수질, 소음, 진동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(변경) 및 신고업무를 제외한다)</u> 6.-8. (생략) 9. (삭제 2000. 11. 14) 10.-11. (생략) 12. <u>농지관리(농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, 농지전용협의, 허가·신고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제외한다)</u> 13.-19. (생략) 20. <u>조립 및 육립사업(산립형집변경허가 및 신고업무를 제외한다)</u>	제6조(사회산업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1.-4. (현행과 같음) 5. <u>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</u> 6.-8. (현행과 같음) 9. <u>공장설립 승인</u> 10.-11. (현행과 같음) 12. <u>농지관리</u> 13.-19. (현행과 같음) 20. <u>조립 및 육립사업</u>	
제7조(건설국)① ----- <u>허가와</u> ----- 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. 1-9. (생략) 10. <u>인·허가와 관련한 민원사무 협의·조정</u> 11. <u>환경관련 배출시설의 인·허가 처리 (대기 수질, 소음, 진동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·변경허가 및 신고)</u> 12. <u>공장설립 승인</u> 13. <u>농지관련 인·허가 업무 처리 및 사후관리 (농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, 농지전용협의 허가, 신고지 사후관리)</u> 14. <u>산립훼손관련 인·허가 업무처리 (산립형집 변경 허가 및 신고)</u> 15-20. (생략)	제7조(건설국) ① ----- <u>건축과</u> ----- ② ----- 1-9. (현행과 같음) 10 . (삭제) 11 . (삭제) 12 . (삭제) 13. (삭제) 14. (삭제) 15-20.(현행과 같음)	